

파주 운정3지구 A5블록 제일풍경채 그랑퍼스트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



※ 본 무순위(사후) 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필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544-2215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0.11.04.)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 도과	없음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0.10.16.(금)	2026.01.20.(화)	2026.01.26.(월)	2026.01.29.(목)	2026.02.03.(화)	2026.02.10.(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O		X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1.20.(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15 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10.16.(금)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1092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084.9382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경쟁이 발생하여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6.01.26.(월)	2026.01.29.(목)	2026.02.03.(화)	2026.02.10.(화)
방 법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분양지원센터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113 (파주 제일풍경채 A5 그랑퍼스트 A/S센터) 지하1층 주차장 121동 1·2호 라인앞	- 제일건설(주) 서울지사 -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59, 9F (사당동 현진빌딩)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경기도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0.11.04.)로부터 3년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5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7~28층 24개동 총 1,926세대 중 잔여 1세대
- 입주시기 : 2026년 02월 예정 (사용검사 완료된 아파트로 잔금 납부 시 즉시 입주 가능)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타입)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잔여 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계					동	호
2026910015	01	084.9382	84	84.9382	27.9538	112.8920	65.0037	177.8957	66.6333	1	112	1405
	합 계									1	-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방식으로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112동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512동이었으나, 112동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약식표기	동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동호수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내	
84A	112동 1405호	145,425,000	285,275,000	430,700,000	43,070,000	387,630,000	512동 1405호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인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본 무순위(사후) 공급 세대의 청약 신청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동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동호수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내	
84	112동 1405호	4,300,000	430,000	3,870,000	512동 1405호

- 본 무순위(사후)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발코니 확장공사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 거부 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불가)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동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추가선택품목	비고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내		
84A	112동 1405호	16,686,000	1,668,600	15,017,400	1. 시스템에어컨 6대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드레스룸) 2. 중문 (현관3연동슬라이딩도어) 3. 현관청정시스템 (공기청정시스템) 4. 엔지니어드스톤 (주방벽, 상판, 아일랜드식탁) 5. 주방아트월 6. 복도아트월 7. 폴리싱타일 8. 방진안전망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동호수 512동 1405호

※ 본 무순위(사후) 2차 공급 세대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조건이며, 품목의 추가 및 변경 계약은 불가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공급금액	KEB하나은행	126-910025-90504	(주)파주운정오피에프브이
발코니확장 공사금액	KEB하나은행	126-910025-91104	(주)파주운정오피에프브이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KEB하나은행	126-910025-92804	(주)파주운정오피에프브이

※ 상기 지정된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납부계좌가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12동 1405호 계약자 → '1121405홍길동'으로 기재)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1.29.(목) ~ 2026.02.07.(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1.2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팸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팸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동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 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 제출 및 계약]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인감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본인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직인날인)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비자 발급내역 /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 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전체발급(1961년 이전 출생자는 1961.1.1.부터) ※ 개명한 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서류)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본인	• 발급 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자격검증 서류접수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 제출 및 계약]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 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 건물에 관한 공문, 건축물철거결정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외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해당 서류	•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

※ 모든 서류는 본 무순위(사후) 2차 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불가로 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구분	계약기간	계약 장소	문의 전화
당첨자 계약체결	2026.02.10.(화) 10:00~16:00	제일건설(주) 서울지사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 59, 9F(사당동 현진빌딩)	1544-2215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 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체결일은 주택소유 여부 및 청약제한사항 등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은 공급자격 적격자에 한하여 체결 가능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당첨자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 사업주체에 소명 서류를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자로 판명되어야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적격 확인을 위해 사업주체는 기본 자격확인서류 외 추가의 별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본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계약금 입금 증빙 서류	-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 12. 21 이후 신규발급분 제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발급 기준 : 본인 발급용 (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발급용도(직접작성) : 서류 제출 및 계약]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 상의 도장과 대조하여 인감확인,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전자수입인지 (종이문서용)	-	• 아파트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계약자와 사업주체가 50%씩 균등 부담 (계약자 75,000원 / 사업주체 75,000원)
	○		부동산 실거래신고서	-	• 계약시 당사에서 출력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일체	본인	• 자격 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서류)	○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본인	• 상기 본인 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	위임장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본인 및 대리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 발급분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모든 서류는 본 무순위(사후) 2차 공급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법」 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기로 합니다.

-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인지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해아리시기를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추후통보예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추후통보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이체 한도 확인)

7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 조항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 주거전용면적 | 수도권 | 비수도권 |
|-----------|------------------|--------|---------|------|
| 제53조제9호가목 |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 60㎡ 이하 | 1억 6천만원 | 1억원 |
| 제53조제9호나목 | 단독주택 | 85㎡ 이하 | 5억원 | 3억원 |
| |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 | |
| | 도시형 생활주택 | | | |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참고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 시 당첨자 명단으로 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사업주체는 별도의 자금대여, 대출 등을 일체 알선하지 않으며, 신청인 자격으로 분양대금을 조달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후 잔금 납부전 취소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됩니다.
- 공급계약 체결 후 계약 후 1개월 내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완료되어야 하며 해당일자 경과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관련된 제세공과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은 선정된 당첨자(예비입주자) 명의로만 가능하고 공동명의로는 불가합니다.
- 청약 전 반드시 현장 및 주변 여건, 단지 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 세대는 계약해제로 인한 무순위청약(사후) 주택으로, 현물 상태 그대로 공급 및 계약하는 조건입니다.

- 상기 공급 세대는 준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으로, 반드시 기 시공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을 계약하여야 합니다.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금액	소방	통신
회사명	(주)원종합엔지니어링	현대공영(주)	(주)금라기술단
감리 금액	4,160,292,400	1,135,540,000	919,820,000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집, 주민공동시설(수영장, 다목적체육관,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외),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 주차장 차로 높이 및 출입구 높이 등

- 본 아파트의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 폭은 6.4m(연석포함7.0M)이며 차량 통행구간의 유효 천장고는 2.7m(지하2층 유효 천장고는 2.3m)으로 계획되었으나, 시공과정에서 각종 배관 공사 등의 사유로 유효 천장고는 일부 구간 변경될 수 있고, 주차공간의 천장고는 법적기준(2.1m) 준수하여 시공 및 사용검사 완료됨.

■ 부적격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 자격을 달리한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공급자격 및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됩니다.
 - ①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부적격 소명 대상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았으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사후) 2차 공급 세대의 분양대금은 계약금, 잔금의 순으로 계약자가 직접 자금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대출기관 알선 없음)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본 아파트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주식회사 파주운정오피에프브이	제일건설(주)
주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28, 7층 (쌍촌동, 동광회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법인등록번호	200111-0537832	135811-0093658

■ 본 무순위(사후) 2차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pungkyeongchae.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분양지원센터 : 경기도 파주시 가람로 113 (파주 제일풍경채 A5 그랑퍼스트 A/S센터, 유기농 카페 - 지하1층 주차장 121동 1·2호 라인앞)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의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모집공고의 내용은 2025.10.31. 개정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반영된 자료입니다.
※ 분양문의 ☎1544-2215 (홈페이지 <https://www.pungkyeongchae.co.kr>)